

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범위”란 다음 각 호(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범위를 말한다.

1. 세부시설 면적 : 5퍼센트 미만
2.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 : 10퍼센트 미만

제9조제1항 중 “「안산시 사무위임 조례」”를 “「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역

제15조의3제1항 중 “폐기물처리시설”을 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”를 “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제1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사면의 안정과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,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
-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 : 330제곱미터 이상

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부지면적이 1,000제곱미터”를 “토지형질변경 면적이 3,000제곱미터”로, “염전·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부지면적”을 “염전·유지인 생산녹지지역,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면적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6호 중 “장례식장”을 “장례시설”로 한다.

제29조제16호 중 “장례식장”을 “장례시설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”을 “갱생보호시설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3호 중 “장례식장”을 “장례시설”로 한다.

가. 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)

제42조제1항제5호 중 “격리병원·정신병원·요양소와”를 “격리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6호 중 “장례

식장”을 “장례시설”로 한다.

가. 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)

나. 갱생보호시설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제43조제4호를 제3호로 하고,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요양소와”를 “요양병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4호 중 “장례식장”을 “장례시설”로 한다. 제53조제2항제1호 중 “시”를 “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(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)

제54조제4호 중 “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”을 “자연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”를 “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”로 한다. 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중심상업지역 : 1,100퍼센트(다만,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퍼센트 이하)

8. 일반상업지역 : 1,100퍼센트(다만,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퍼센트 이하)

9. 근린상업지역 : 800퍼센트(다만,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퍼센트 이하)

제5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 : 80퍼센트 미만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교통·방화”를 “경관·교통·방화”로 한다.

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7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,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, 건축허가(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·허가 등을 포함한다)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소관 실·과		도시계획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도시계획과장 조 용 대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계획팀장 윤 풍 영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원 현 (행정 2373)

[별표 3]

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3호 관련)

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)
- 나.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관람장 제외)
- 다.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- 라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(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.)
- 마.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(격리병원을 제외한다)
- 바.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- 사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(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- 아.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)
- 자.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
- 차.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
- 카.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
- 타.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- 파.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- 하.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

[별표 4]

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4호 관련)

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)
- 나.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
- 다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(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.)
- 라.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(격리병원을 제외한다.)
- 마.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- 바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(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- 사.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(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)
- 아.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금융업소,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)
- 자.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·기록매체복제업·봉제(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),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·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·두부 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(1)부터 (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- 차.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- 카.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·저장소에 한한다)
- 타.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차고
- 파.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
- 하.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- 거.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- 너.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

[별표 5]

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5호 관련)

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)
- 나.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
- 다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(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.)
- 라.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(격리병원을 제외한다.)
- 마.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- 바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(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- 사.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(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)
- 아.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
- 자. 이 조례 별표 4 자목의 공장
- 차.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- 카.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·저장소에 한한다)
- 타.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
- 파.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
- 하.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- 거.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- 니.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

[별표 6]

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6호 관련)

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- 나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- 다.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
- 라.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주유소, 위험물저장소, 액화가스취급소, 액화가스판매소, 고압가스판매소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)
- 마.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
- 바.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마목, 바목에 해당하는 것
- 사.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(교정시설 및 국방·군사시설을 제외한다)
- 아.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(야외음악당,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)
- 자.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
[별표 8]

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8호 관련)

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
- 나. 별표 1 제17호의 공장(영 별표 9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)
- 다.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
- 라.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영 별표 9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)
- 마.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(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한다)

[별표 9]

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9호 관련)

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
- 나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- 다.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
- 라.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

[별표 10]

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)

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13호의 운동시설
- 나.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(영 별표 1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다.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)
- 라.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(교정시설 및 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한다)
- 마.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

[별표 12]

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2호 관련)

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
- 나.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- 다.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- 라.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- 마.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- 바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- 사.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를 제외한다)
- 아.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
- 자.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- 차.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
[별표 14]

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
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(대부동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 이하로 대부동에 건축하는 주택에 한함) 다만,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.

- 1) 농업인의 기준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다.
- 2) 어업인의 기준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에 따른다.
- 3) 농어업인 주택의 기준은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.

나.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,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.

다.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

라.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(대부동을 제외한 지역은 기존부지내에서 증·개축에 한한다)

마.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
바.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·중학교·고등학교

사.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
아.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

자.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
차.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(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)

[별표 15]

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5호 관련)

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단란주점을 제외한다)
- 나.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
- 다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에 한한다)
- 라.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(1) 학교(중학교·고등학교에 한한다)
 - (2) 교육원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)
 - (3)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)
- 마.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·식품공장·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(이하 “첨단업종의 공장”이라 한다)으로서 영 별표 16제2호 아목(1)부터 (5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
[별표 17]

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7호 관련)

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(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·바목·사목(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)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
- 나.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
- 다.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
- 라.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 시설(양식장을 포함한다)
- 마.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- 바.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
[별표 18]

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)

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를 제외한다)
- 나.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·자목 및 러목(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)에 해당하는 것
- 다.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
- 라.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- 마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- (1)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
 - (2)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(「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·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것에 한한다)
- 바.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- 사.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- 아.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- 자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- 차.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
- 카.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(1)부터 (4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- 타.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- 파.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- 하. 별표 1 제29호의 야영시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9조(도시계획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·「<u>안산시 사무위임 조례</u>」·「안산시 사무위임 규칙」·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소관부서에서 설치·관리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3조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) 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5조의3(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)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” 이란</p>	<p>제8조2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“<u>조례로 정하는 범위</u>”란 다음 각 호(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범위를 말한다.</p> <p>1. 세부시설 면적 : 5퍼센트 미만</p> <p>2. 건축물 연면적 또는 높이 : 10퍼센트 미만</p> <p>제9조(도시계획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--- ----- ----- ----- <u>「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」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<u>주택법</u>」 제15조에 따른 <u>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역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의3(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) ① ----- -----</p>

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, 문화시설,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, 도서관, 연구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6조의2(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)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8조(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) 시장은 영 제56조별표1의제2호나목(2)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,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

6. (생략)

제20조(토지분할 제한) ① 영 제56조별표1의 2제2호라목(1)(가)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·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 : 1천 제곱미터 (2005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는 500제곱미터) 이상

-----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2(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)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사면의 안정과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,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

6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토지분할 제한) ① -----

-----.

1. ----- 330제곱미터 이상

2.·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3조(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) ① (생략)

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,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부지면적이 1,000제곱미터(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·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부지면적 500제곱미터)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.

1. ~ 9. (생략)

③ (생략)

제28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. ~ 15. (생략)
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29조(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. ~ 15. (생략)
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37조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

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토지형질변경면적이 3,000제곱미터-----
----- 염전·유지인 생산녹지지역,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-----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-----
-----.

1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-----
장례시설

제29조(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-----
-----.

1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-----
장례시설

제37조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

① -----

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. ~ 10. (생략)
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교도소

나.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

12. (생략)
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②·③ (생략)

제42조(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

①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. ~ 4. (생략)
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·정신병원·요양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

6. ~ 13. (생략)

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교도소

나.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

15. (생략)
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
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

가. 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)

나. 갱생보호시설, 그 밖에 범죄자의 갇셈·보육·교육·보건-----

12. (현행과 같음)

13. -----
장례시설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2조(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

①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-----격리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
과-----

6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-----

가. 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)

나. 갱생보호시설, 그 밖에 범죄자의 갇셈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

15. (현행과 같음)

16. -----

장례식장

② (생략)

제43조(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) 영 제76조에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- 1.·2. (생략)
- 3.·4.
- 5. ~ 7. (생략)
- 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 시설 중 격리병원·정신병원·요양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
- 9. ~ 23. (생략)
- 2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제53조(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) ① (생략)

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농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- 1.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·처리시설(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에 한정한다)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·연구시설
- 2. (생략)

<신 설>

제54조(기타 용도지구·구역 등의 건폐율)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·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장례시설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) -----
-----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- 4.·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- 5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-----
----- 요양병원과

- 9. ~ 23. (현행과 같음)
- 24. -----

장례시설

제53조(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- 1. -----
----- 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 -----
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(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 시설만 해당한다)

제54조(기타 용도지구·구역 등의 건폐율) -----

-----.

1. ~ 3. (생략)

4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 보호구역 : 60퍼센트 이하

5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: 70퍼센트 이하

6. (생략)

제56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영 제 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중심상업지역 : 1,100퍼센트

8. 일반상업지역 : 1,100퍼센트

9. 근린상업지역 : 800퍼센트

10. ~ 1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57조(기타 용도지구·구역 등의 용적률)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·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2. (생략)

3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 보호구역 : 80퍼센트 미만. 다만,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, 공원집단 시설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4. (생략)

제58조(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자연공원-----

5. -----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제56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중심상업지역 : 1,100퍼센트(다만,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퍼센트 이하)

8. 일반상업지역 : 1,100퍼센트(다만,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퍼센트 이하)

9. 근린상업지역 : 800퍼센트(다만,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퍼센트 이하)

10. ~ 1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기타 용도지구·구역 등의 용적률) 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자연공원 : 80퍼센트 미만

4.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

완화)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·
중심상업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·
전용공업지역·일반공업지역·준공업지역
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교통·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
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안산시도시계획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
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
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「산업입지 및
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생사업지구내
복합용지 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
사업(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
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)인 경우
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
있다.

1. ~ 2. (생략)

[별표 3]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
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3호 관련)

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
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
수 있다.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
가. ~ 다. (생략)

라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
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
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
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
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마. ~ 바. (생략)

사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(같은 표 제29호의
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, 유스호스텔의 경우
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

완화) -----

경관·교통·방화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3]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
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3호 관련)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
--다목(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
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
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
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
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마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-----(유스호스텔의 경우
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
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차. ~ 파. (생략)

< 신 설 >

[별표 4]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4호 관련)
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
가. ~ 나. (생략)

다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무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라. ~ 마. (생략)

바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(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,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사. ~ 거. (생략)

< 신 설 >

[별표 5]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5호 관련)

가. ~ 나. (생략)

다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무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라. ~ 마. (생략)

바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(같은 표 제29호의

차. ~ 파. (현행과 같음)

하.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

[별표 4]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4호 관련)

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다목(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라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----- (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사. ~ 거. (현행과 같음)

너.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

[별표 5]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5호 관련)

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다목(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라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----- (유스호스텔의

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, 유스호스텔의 경우
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
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사. ~ 거. (생략)

< 신 설 >

[별표 6]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
건축물(제27조제1항제6호 관련)
영 별표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
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
수 없다.

가. (생략)

< 신 설 >

나. (생략)

다.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
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
하는 주유소, 위험물저장소, 액화가스취급소,
액화가스판매소, 고압가스판매소

라. ~ 사. (생략)

아.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[별표 8]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
건축물(제27조제1항제8호 관련)
영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가. (생략)

나. 별표 1 제17호의 공장(영 별표 9 제1호
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
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

사. ~ 거. (현행과 같음)

너.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

[별표 6]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
건축물(제27조제1항제6호 관련)

---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
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
이상인 것

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

라. -----

---- 주유소, 위험물저장소, 액화가스취급소,
액화가스판매소, 고압가스판매소(「환경친화
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
제외한다)

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

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

사. (현행 바목과 같음)

아. (현행 사목과 같음)

자. ----- 장례시설

[별표 8]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
건축물(제27조제1항제8호 관련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(영 별표9 제1호
다목에 해당하는 것과 「산업집적활성화

다. ~ 마. (생략)

[별표 9]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9호 관련)

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가. (생략)

< 신 설 >

나.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(교정 시설 및 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한다)

다. (생략)

[별표 10]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)

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가. ~ 나. (생략)

다.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

라. ~ 마. (생략)

[별표 12]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2호 관련)

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
가. ~ 자. (생략)

차.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

[별표 14]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4호 관련)

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는 제외한다)

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
[별표]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9호 관련)

---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
다. -----군사시설

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

[별표 10]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0호 관련)

-----.

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시설
(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)

라. ~ 마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2]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2호 관련)

-----.

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
차.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
[별표 14]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4호 관련)

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가. ~ 자. (생략)

차.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(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)

[별표 15]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5호 관련)

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가. ~ 다. (생략)

라.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
- (1) ~ (2) (생략)
- (3) 직업훈련소

마.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·식품공장·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(1)부터 (5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
[별표 17]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7호 관련)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·바목·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

나. ~ 바. (생략)

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
차.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(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)

[별표 15]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5호 관련)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

- (1) ~ (2) (현행과 같음)
- (3)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)

마. ----- 가공공장 및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(이하 “첨단업종의 공장”이라 한다)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(1)부터 (5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
[별표 17]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7조제1항제17호 관련)

가. ----- 사목(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)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

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8]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
건축물(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)

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
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
건축할 수 있다.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

가. ~ 아. (생략)

자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(같은 표 제29호의
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)

차. (생략)

카.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
공장과 읍·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
및 첨단산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
자목(1)부터 (4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
하는 것

타. ~ 파. (생략)

<신 설>

[별표 18]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
건축물(제27조제1항제18호 관련)

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

자. -----수련시설

차. (현행과 같음)

카. -----식품
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(1)부터
(4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
타. ~ 파. (현행과 같음)

하.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